

인천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218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복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6.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0. 12. 8.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2. 12. 8., 이자 연 44%로 대여하였다가 2012. 10. 10. 주식회사 E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4. 6.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6375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9. C에게 27,221,884원 및 그중 9,467,6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C, G, H을 자녀로 두었다가 2021. 2. 17. 사망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C, G, H은 2021. 6. 30. 망인이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1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2021. 6.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이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로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모자관계에 있는 점, ② C은 2010. 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아들인 C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0.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